DOI | http://dx.doi.org/10.22912/dgsh.2020..68.477

〈譯註〉

『新唐書』 권76, 后妃上, 則天武皇后傳(1)*

劉 潤 佳**

高宗則天順聖皇后武氏, 幷州文水人. 父士彠, 見外戚傳. 文德皇后崩, 久之, 太宗聞士彠女美, 召爲才人, 方十四. 母楊, 慟泣與訣, 后獨自如, 曰, "見天子庸知非福, 何兒女悲乎?" 母韙其意, 止泣. 旣見帝, 賜號武媚. 及帝崩, 與嬪御皆爲比丘尼. 高宗爲太子時, 入侍, 悅之. 王皇后久無子, 蕭淑妃方幸, 后陰不悅. 它日, 帝過佛廬, 才人見且泣, 帝感動. 后廉知狀, 引內后宮, 以撓妃寵.

高宗 則天順聖皇后 武氏는 幷州 文水[縣][1] 사람이다.[2] 부친 士彠은 外戚傳에 기술되어 있다.[3] [太宗 貞觀 10년(636) 6월] 文德皇后가 붕어한 지[4] 얼

---

* 『신당서』 권76, 后妃上, 則天武皇后傳, 中華書局標點本, 3474~3477쪽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하 出典은 처음에만 적겠다.

** 東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課程 修了

1) 『舊唐書』 권39, 地理志2, 河東道, 北京太原府 조, 中華書局, 1481쪽.

2) 『太平廣記』 권137, 徵應3, 武士彠, "唐武士彠. 太原文水縣人."(中華書局, 986쪽).

3) 『구당서』 권58, 武士彠傳, 2316~2317쪽; 『新唐書』 권206, 外戚, 武士彠傳, 中華書局, 5835~5836쪽.

4) 『구당서』 권3, 太宗本紀下, 貞觀 10년(636) 6월 조, "己卯(21일), 皇后長孫氏崩于立政殿."(46쪽); 同, 11월 조, "庚寅, 葬文德皇后於昭陵."(46쪽); 『구당서』 권149, 柳冕傳, "冕與同職張薦等奏議曰, '…… 臣謹按實錄, 文德皇后以貞觀十年九月崩, 十一月葬'"(4030~4031쪽); 『신당서』 권200, 儒學下, 暢當傳, "李吉甫曰, '……貞觀十年六月, 文德皇后崩, 十一月而葬.'"(5717쪽); 『資治通鑑』 권194, 太宗 貞觀 10년 6월 조, "[長孫皇后]己卯, 崩于立政殿."(中華書局, 6121쪽); 『唐會要』 권3, 皇后, 太宗皇后長孫氏, "武德九年八月二十一日, 立爲皇后. 貞觀十年五月二十六日, 崩于立政殿, 年三十六, 謚曰文德皇后. …… 天寶八載六月, 加尊文德順聖皇后."(上海古籍出版社, 25쪽).

마 후 [다음 해 11월][5] 太宗은 무사확의 딸이 아름답다고 듣고 불러들여 才人으로 삼았는데, 바야흐로 14세였다. 모친 楊[氏]가 슬피 울면서 이별하니 后(즉 무측천)는 홀로 태연하게 말하길 "천자를 만나는데 어찌 복이 아니지 않겠으며 왜 제가 슬퍼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모친은 그 뜻을 옳다고 여기고 울음을 그쳤다. 황제(즉 태종)를 만나자 武媚라는 칭호를 하사해 주었다. [정관 23년(649) 5월] 황제가 붕어하자[6] 빈첩[嬪御]들과 함께 모두 비구니가 되었다.[7] 고종이 태자로 있을 때 入侍하면서 그녀를 사랑하였다[悅].[8] 王皇后[9]는 오래도록 아들이 없는 터에 蕭淑妃가 바야흐로 총애를 받자[10] 왕황후는 속으로 마음이 상하였다.[11] 어느 날 황제(즉 고종)가 불당을 예방하였는데[過佛廬], 才人(즉 무측천)이 [황제를] 보고 울자 황제의 감정이 움직였다.[12] 왕황후는 상황을 살펴 알고 後宮으로 들여 소숙비의 총애를 흔들었다[撓].[13]

---

5) 『자치통감』 권195, 태종 정관 11년(637) 11월 조, "辛卯, 上幸懷州, 丙午, 還洛陽宮故. 故荊州都督武士彠女, 年十四, 上聞其美, 召入后宮, 爲才人."(6134쪽); 『구당서』 권6, 則天皇后本紀, "初, 則天年十四時, 太宗聞其美容止, 召入宮, 立爲才人."(115쪽);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貞觀十年. 文德皇后崩. 太宗聞武士彠女有才貌. 召入宮. 以爲才人."(26쪽).

6) 『구당서』 권4, 太宗本紀下, 정관 23년 5월 조, "己巳, 上崩於含風殿, 年五十二."(62쪽); 『자치통감』 권199, 정관 23년 5월 조, "上崩."(6267쪽).

7) 『자치통감』 권199, 高宗 永徽 5년(654) 3월 조, "初, …… 太宗崩, 武氏隨衆感業寺爲尼."(6284쪽);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太宗崩. 隨嬪御之例出家, 爲尼感業寺."(23쪽); 『구당서』 권6, 則天皇后本紀, "初, …… 及太宗崩, 遂爲尼, 居感業寺."(115쪽).

8) 『자치통감』 권199, 영휘 5년 3월 조, "初, …… 上之爲太子也, 入侍太宗, 見才人武氏而悅之."(6284쪽);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時上(즉 고종)在東宮, 因入侍, 悅之."(23쪽).

9) 『당회요』 권3, 皇后, 高宗皇后王氏, "永徽元年正月, 立爲皇后. 六年十月十二日, 廢爲庶人."(23쪽).

10) 『자치통감』 권199, 고종 영휘 5년 3월 조, "初, 王皇后無子, 蕭淑妃有寵."(6284쪽).

11)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時蕭良娣有寵, 王皇后惡之."(23~24쪽).

12)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上因忌日行香, 見之, 武氏泣, 上亦潸然."(23쪽).

才人有權數, 詭變不窮. 始, 下辭降體事后, 后喜, 數譽於帝, 故進爲昭儀. 一旦顧幸在蕭右, 寖與后不協. 后性簡重, 不曲事上下, 而母柳見內人尚宮無浮禮, 故昭儀伺后所薄, 必款結之, 得賜予, 盡以分遺. 由是后及妃所爲必得, 得輒以聞, 然未有以中也. 昭儀生女, 后就顧弄, 去, 昭儀潛斃兒衾下, 伺帝至, 陽爲歡言, 發衾視兒, 死矣. 又驚問左右, 皆曰, "后適來." 昭儀即悲涕, 帝不能察, 怒曰, "后殺吾女, 往與妃相讒媚, 今又爾邪!" 由是昭儀得入其訾, 后無以自解, 而帝愈信愛, 始有廢后意. 久之, 欲進號宸妃, 侍中韓瑗 · 中書令來濟言, "妃嬪有數, 今別立號, 不可." 昭儀乃誣后與母厭勝, 帝挾前憾, 實其言, 將遂廢之. 長孫无忌 · 褚遂良 · 韓瑗及濟瀕死固爭, 帝猶豫, 而中書舍人李義府 · 衛尉卿許敬宗素險側, 狙勢即表請昭儀爲后, 帝意決, 下詔廢后. 詔李勣 · 于志寧奉璽綬進昭儀爲皇后, 命群臣及四夷酋長朝后肅義門, 內外命婦入謁. 朝皇后自此始.

무재인은 권모술수에 능하고 임기응변의 꾀가 무궁하였다. 처음에는 말을 공손히 하고 자기를 낮추어 황후를 섬기니 황후가 기뻐하며 황제에게 자주 그녀를 칭찬하였으므로 [영휘 5년(654) 3월] 昭儀로 높아졌다.[14] 하루아침에 황제의 총애가 소숙비 위에 놓이게 되자 점차 황후와 사이가 나빠졌다. 황후는 천성이 장엄하고 신중하였으므로[簡重] 위아래 사람들에게 영합하지 못하였으며 [황후의] 모친 柳[氏]는 內人이나 尙宮을 만날 때 겉치레 예절이 없었다. 이에 대해 소의는 황후가 박대하는 사람을 엿보아 반드시 친분을 맺고 賜予를 받으면 모두 나누어 주었다. 이로 인해 황후와 숙비가 하는 일은 반드시 알아내어[15] 바로 황제에게 알렸으나 아직 [그

13) 『자치통감』 권199, 영휘 5년 3월 조, "初, … 忌日, 上詣寺行香, 見之, 武氏泣, 上亦泣. 王后聞之, 陰令武氏長髮, 勸上內之後宮, 欲以間淑妃之寵."(6284쪽);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乃召入宮, 潛令長髮, 欲以間良娣之寵."(24쪽).

14) 『자치통감』 권199, 영휘 5년 3월 조, "武氏巧慧, 多權數, 初入宮, 卑辭屈體以事后, 后愛之, 數稱其美於上. 未幾大幸, 拜爲昭儀."(6284쪽);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旣入宮, 寵待踰於良娣, 立爲昭儀."(24쪽); 『구당서』 권6, 則天皇后本紀, "大帝於寺見之, 復召入宮, 拜昭儀."(115쪽).

들을] 중상하지는 않았다.[16] [영휘 5년(654) 10월] 소의가 딸을 낳자 황후가 찾아가 돌보며 놀았다. 황후가 돌아간 후 소의가 은밀하게 딸을 이불 속에서 죽이고 황제가 오기를 살펴서 겉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이불을 들어 아이를 보았는데 죽어 있었다. 또 [고종이] 놀라서 좌우 사람들에게 묻으니 모두가 말하길 "황후가 마침 왔었다."라고 하였다. 소의가 바로 슬프게 우니 황제는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노해 말하길 "황후가 내 딸을 죽였다. 이전에는 숙비와 서로 질투하며 헐뜯더니 지금 또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소의는 [황후를] 헐뜯을 수 있게 되었고 황후는 해명할 길이 없었다. 황제는 더욱 [소의를] 믿고 사랑하였고 비로소 황후를 폐할 뜻을 가지게 되었다.[17] [영휘 6년(655) 6월] 얼마 후 [황제는 소의를] 宸妃로 칭호를 높이려 하였는데[18] 侍中 韓瑗과 中書令 來濟가 말하길 "妃嬪은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19] 지금 별도로 [새로운] 호칭을 두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하였다.[20] [같은 달] 소의는 이에 황후가 그 모친과 함께 厭勝한다

15) 『자치통감』 권199, 영휘 5년 10월 조, "后不能曲事上左右, 母魏國夫人柳氏及舅中書令柳奭入見六宮, 又不爲禮. 武昭儀伺后所不敬者, 必傾心與相結, 所得賞賜分與之. 由是后及淑妃動靜, 昭儀必知之, 皆以聞於上."(6286쪽).

16) 『자치통감』 권199, 영휘 5년 10월 조, "后寵雖衰, 然上未有意廢也."(6286쪽).

17) 『자치통감』 권199, 영휘 5년 10월 조, "昭儀生女, 后憐而弄之, 后出, 昭儀潛扼殺之, 覆之以被. 上至, 昭儀陽歡笑, 發被觀之, 女已死矣, 即驚啼. 問左右, 左右皆曰, '皇后適來此.' 上大怒曰, '后殺吾女!' 昭儀因泣數其罪. 后無以自明, 上由是有廢立之志. …… 上因從容言皇后無子以諷無忌, 無忌對以他語, 竟不順旨. 上及昭儀皆不悅而罷. … 無忌終不許."(6286~6287쪽);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上從容言王氏無子, 以風長孫無忌, 無忌竟不順旨. … 褚遂良固執不從."(24쪽);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昭儀所生女暴卒, 又奏王皇后殺之, 上遂有廢立之意."(24쪽).

18) 『구당서』 권6, 則天皇后本紀, "進號宸妃."(115쪽).

19) 당 전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비빈은 妃가 4員, 嬪이 9員 등 총 121員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宸妃는 보이지 않는다. 즉 氣賀澤保規 저, 정병준 역, 「唐代의 皇后와 皇太子」, 『한국고대사탐구』 29, 2018, 617쪽 참조.

20) 『자치통감』 권199, 영휘 6년(655) 6월 조, "唐因隋制, 後宮有貴妃 · 淑妃 · 德妃 · 賢妃皆視一品. 上欲特置宸妃, 以武昭儀爲之, 韓瑗 · 來濟諫, 以爲故事無之, 乃止."(6288

고 모함하니[21] 황제가 이전의 감정까지 더해 그 말을 진실로 믿고 장차 마침내 황후를 폐하려 하였다. 長孫无忌 · 褚遂良 · 韓瑗 및 [來]濟가 죽을 각오로 강하게 다투니[22] 황제가 猶豫하였다. 그런 때 中書舍人 李義府와 衛尉卿 許敬宗은 평소 險側하였는데, [7월] 형세를 노려 즉시 表를 올려 소의를 황후로 삼도록 청하니,[23] 황제가 뜻을 정하고 [10월] 조서를 내려 황후를 폐하였다.[24] [11월] 조서를 내려 李勣 · 于志寧에게 璽綬를 받들어 소의를 황후로 높이게 하고[25] 군신 및 四夷酋長에게 명해 肅義門에서 황후에게 조

쪽); 『冊府元龜』 권327, 宰輔部, 諫諍3, 韓瑗 조, "永徽中爲侍中. 高宗特號武氏爲宸妃, 瑗與中書令來濟奏言, '帝王嬪妃自有恒數, 今若別立妃號, 臣等竊以爲不可'. 帝乃止."(鳳凰出版社, 3698~3699쪽); 『당회요』 권3, 雜錄, 영휘 6년 10월 조, "武后未立, 上特號爲宸妃. 侍中韓瑗 · 中書令來濟奏言, '帝王嬪妃, 自有恆數, 今若別立妃號. 臣等竊以爲不可', 乃止."(38쪽).

21) 『자치통감』 권199, 영휘 6년 6월 조, "武昭儀誣王后與其母魏國夫人柳氏爲厭勝."(6288쪽);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俄誣王皇后與母柳氏求厭勝之術."(24쪽).

22) 『구당서』 권80, 韓瑗傳, "時高宗欲廢王皇后, 瑗涕泣諫曰, '皇后是陛下在藩府時先帝所娶, 今無愆過, 欲行廢黜, 四海之士, 誰不惕然. 且國家屢有廢立, 非長久之術. 願陛下爲社稷大計, 無以臣愚不垂採察.'"(2740쪽).

23) 『자치통감』 권199, 영휘 6년 7월 조, "[李義府]是日, 代[王]德儉直宿, 叩閤上表, 請廢皇后王氏, 立武昭儀, 以厭兆庶之心."(6288~6289쪽); 『자치통감』 권200, 영휘 6년 10월 조, "乙卯, 百官上表請立中宮. 乃下詔曰, '武氏門著勳庸, 地華纓紱, 往以才行選入後庭. 譽重椒闈, 德光蘭掖. 朕昔在儲貳, 特荷先慈, 常得侍從, 弗離朝夕, 宮壺之內, 恆自飭躬, 嬪嬙之間, 未嘗迕目, 聖情鑒悉, 每垂賞歎, 遂以武氏賜朕, 事同政君, 可立爲皇后.'"(6293~6294쪽);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永徽五年, 中書舍人李義府. 上表請廢王皇后. 立昭儀, 以厭衆庶之心. 上悅, 謂李勣曰, ……."(24쪽).

24) 『구당서』 권4, 高宗本紀上, 영휘 6년 10월 조, "己酉, 廢皇后王氏爲庶人, 立昭儀武氏爲皇后, 大赦天下."(74쪽); 『자치통감』 권200, 영휘 6년 10월 조, "己酉, 下詔稱, '王皇后 · 蕭淑妃謀行鴆毒, 廢爲庶人, 母及兄弟, 並除名, 流嶺南.' 許敬宗奏, '故特進贈司空王仁祐告身尚存, 使逆亂餘孽猶得爲蔭. 並請除削.' 從之."(6293쪽); 『구당서』 권6, 則天皇后本紀, "永徽六年, 廢王皇后而立武宸妃爲皇后."(115쪽); 『구당서』 권86, 高宗中宗諸子, 燕王忠传, "(영휘 6년)其年王皇后被廢, 武昭儀所生皇子弘年三歲."(2824쪽); 『당회요』 권3, 皇后, 高宗皇后王氏, "永徽元年正月, 立爲皇后, 六年十月十二日, 廢爲庶人."(23쪽).

현하게 하고 內外命婦에게 들어가 알현하게 하였다.[26] 황후에게 조현하는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后見宗廟, 再贈士彠至司徒, 爵周國公, 謚忠孝, 配食高祖廟. 母楊, 再封代國夫人. 家食魏千戶. 后乃製'外戚誡'獻諸朝, 解釋譏噪. 於是逐无忌 · 遂良, 踵死徙, 寵煽赫然. 后城宇深, 痛柔屈不恥, 以就大事, 帝謂能奉己, 故扳公議立之. 已得志, 即盜威福, 施施無憚避, 帝亦懦昏, 舉能鉗勒, 使不得專, 久稍不平. 麟德初, 后召方士郭行眞入禁中爲蠱祝, 宦人王伏勝發之, 帝怒, 因是召西臺侍郎上官儀, 儀指言后專恣, 失海內望, 不可承宗廟, 與帝意合, 乃趣使草詔廢之. 左右馳告, 后遽從帝自訴, 帝羞縮, 待之如初, 猶意其恚, 且曰, "是皆上官儀教我!" 后諷許敬宗構儀, 殺之.

[영휘 6년(655) 11월] 황후가 宗廟를 알현하고[27] [현경 원년(656) 2월] 다시 무사확을 추증하여 司徒로 삼고 周國公이라는 작호를 내리고 시호를 忠孝라고 하며 高祖廟에 配食하였다.[28] [영휘 6년 11월] 모친 楊[氏]는 또

25)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謂李勣曰. 立昭儀之事. … 上意乃定. 遂立爲皇后."(24쪽); 『신당서』 권93, 李勣傳, "帝欲立武昭儀爲皇后, 畏大臣異議, 未決. 李義府 · 許敬宗又請廢王皇后. 帝召勣與長孫无忌. 于志寧 · 褚遂良計之, 勣稱疾不至. 帝曰, '皇后無子, 罪莫大于絕嗣, 將廢之.' 遂良等持不可, 志寧顧望不對. 帝後密訪勣, 曰, '將立昭儀, 而顧命之臣皆以爲不可, 今止矣!' 答曰, '此陛下家事, 無須問外人.' 帝意遂定, 而王后廢. 詔勣 · 志寧奉冊立武氏."(3820쪽).

26) 『자치통감』 권200, 영휘 6년 11월 조, "丁卯朔, 臨軒命司空李勣齎璽綬冊皇后武氏. 是日, 百官朝皇后於肅義門."(6294쪽).

27)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영휘 6년 11월 조, "己巳, 皇后見于廟. 癸酉, 追贈后父故工部尙書 · 應國公 · 贈幷州都督武士彠爲司空. …… 癸巳(27일), 應國夫人楊氏改封代國夫人"(75쪽).

28)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顯慶 원년(656) 2월 조, "辛亥(17일), 贈武士彠司徒 · 周國公"(75쪽); 『자치통감』 권200, 현경 원년 2월 조, "辛亥, 贈武士彠司徒, 賜爵周國公."(6296쪽).

代國夫人에 封하였다.[29] 집안에게 魏[郡] 1,000戶를 食하게 하였다. [현경 원년 9월] 황후가 이에 '外戚誡'를 지어 조정에 바쳐 [자신에 대한] 논란[譏嘆]을 해명하였다.[30] 이에 장손무기와 저수량을 쫓아내고 연이어 죽이거나 유배 보내니, [황후에 대한 황제의] 총애가 하늘을 찔렀다. 황후는 심지[城宇]가 깊고, 몸을 굽히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큰일을 이루었다. 황제는 [그녀가] 능히 자신을 받든다고 생각했으므로 公議를 뿌리치고 황후로 세웠다. 이미 뜻을 이루자 [황후는] 바로 威福을 훔쳐 행동함에 거리낌이 없었지만, 황제는 나약하고 우둔하여 행동에 제약을 받고 마음대로 행할 수 없게 되자 얼마 후부터 조금씩 不平이 생겨났다. 麟德 초[인덕 원년(664) 10월] 황후가 方士 郭行眞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蠱祝을 하였는데, 宦人 王伏勝이 이를 알리자 황제가 노하여 西臺侍郎 上官儀를 부르니 상관의는 황후의 專恣를 지적하면서 海內의 인심을 잃어버려 宗廟를 계승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황제의 뜻과 일치하였다. 이에 [황제가] 바로 조서를 기초하게[草詔] 하여 황후를 폐위시키려 하였다. 좌우 사람들이 달려가 [황후에게] 알리니 황후가 급히 황제에게 자신을 호소하였다. 황제가 부끄러워하면서 위축되어 이전과 같이 대하였고 황후가 화를 낼까 우려하여 말하길 "이는 모두 상관의가 교사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황후가 허경종에게 상관의를 모함하게 하여[31] [12월] 죽였다.[32]

---

29) 앞의 영휘 6년 11월의 각주 참조. 또 『구당서』 권183, 武承嗣傳, "及則天立爲皇后, 追贈士彠爲司徒 · 周忠孝王, 封楊氏代國夫人."(4727쪽)라고 보인다.

30)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현경 원년 9월 조, "皇后製外戚誡"(76쪽).

31) 『자치통감』 권201, 麟德 원년(664) 10월 조, "初, 武后能屈身忍辱, 奉順上意, 故上排羣議立之, 及得志, 專作威福, 上欲有所爲, 動爲后所制, 上不勝其忿. 有道士郭行眞, 出入禁中, 嘗爲厭勝之術. 宦者王伏勝發之. 上大怒, 密召西臺侍郎 · 同東西臺三品上官儀議之. 儀因言, '皇后專恣, 海內所不與, 請廢之.' 上意亦以爲然, 即命儀草詔. 左右奔告于后, 后遽詣上自訴. 詔草猶在上所, 上羞縮不忍, 復待之如初. 猶恐后怨怒, 因紿之曰, '我初無此心, 皆上官儀教我.' 儀先爲陳王諮儀, 與王伏勝俱事故太子忠, 后於是使許敬宗誣奏儀 · 伏勝與忠謀大逆."(6342쪽); 『책부원구』 권933, 總錄部, 誣搆2, 許敬

初, 元舅大臣怫旨, 不閱歲屠覆, 道路目語, 及儀見誅, 則政婦房帷, 天子拱手矣. 羣臣朝 · 四方奏章, 皆曰'二聖'. 每視朝, 殿中垂簾, 帝與后偶坐, 生殺賞罰惟所命. 當其忍斷, 雖甚愛, 不少隱也. 帝晩益病風不支, 天下事一付后. 后乃更爲太平文治事, 大集諸儒內禁殿, 撰定『列女傳』·『臣軌』·『百僚新誡』·『樂書』等, 大氐千餘篇. 因令學士密裁可奏議, 分宰相權.

앞서 元舅 大臣이 뜻에 어긋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살육을 당하자 사람들은 길에서 만나면 눈으로 말하는 상황이 되었다. [乾封 원년(666) 12월] 상관의가 주살된 후 정치가 황후에게 귀결되고 천자는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게 되었다. 군신들이 조알하거나 사방에서 奏章을 올릴 때면 모두 '二聖'이라 불렀다.[33] 조정에서 정무를 볼 때에는 殿 안에 주렴을 내리고 황제

宗 조, "許敬宗永徽中爲禮部尙書, 上官儀爲西臺侍郎, 同東西二臺三品. 時有道士郭行眞出入宮掖, 嘗爲皇后行厭勝之法. 中官王伏勝奏言之, 高宗大怒, 密召儀議其事, 將廢后爲庶人, 仍遣儀具詔草. 俄而后申訴見納, 帝又自悔, 恐后怨怒, 遽詒云, '此竝上官儀教我也.' 緜是深爲后所惡."(10806쪽).

32)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인덕 원년 12월 조, "丙戌, 殺西臺侍郎上官儀. 戊子, 庶人[李]忠坐與儀交通, 賜死"(86쪽); 『신당서』 권4, 고종본기, 인덕 원년 12월 조, "丙戌, 殺上官儀. 戊子, 殺庶人忠"(64쪽); 『자치통감』 권201, 인덕 원년 12월 조, "丙戌, 儀下獄. 與其子庭芝 · 王伏勝皆死, 籍沒其家. 戊子, 賜忠死于流所. …… 朝士流貶者深衆, 皆坐與儀交通故也. 自是上每視事, 則后垂簾於後, 政無大小, 皆與聞之. 天下大權, 悉歸中宮, 黜陟 · 殺生, 決於其口, 天子拱手而已, 中外謂之二聖. [考異: 唐曆, '羣臣朝謁, 萬方表奏, 皆呼爲二聖. 帝坐于東間, 后坐于西間. 后隨其愛憎, 生殺在口', 按武后雖悍戾, 豈得高宗尙在, 與高宗對坐受羣臣朝謁乎! 恐不至此. 今從實錄]"(6342~6343쪽). 여기서 司馬光은 『唐曆』의 서술을 비판하면서도 상관의 사건을 기점으로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권이 무후에게 넘어간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新唐書』 권76, 則天武皇后傳을 계속 읽어 보면 권력이 과연 완전히 무후에게 넘어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33) 앞 각주의 『자치통감』 권201, 인덕 원년 12월 조의 후반부 참조. 또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自此參預朝政. 幾三十年. 當時畏威. 稱爲二聖."(24쪽); 『신당서』 권4, 則天皇后本紀, "上元元年(674)[八月], 高宗號天皇, 皇后亦號天后, 天下之人謂之'二聖'."(81쪽); 『구당서』 권6, 則天皇后本紀, "[上元元年八月] 高宗稱天皇, 武后亦稱天后. 后素多智計, 兼涉文史. 帝自顯慶(656~661)已後, 多苦風疾, 百司表奏, 皆委天后

가 황후와 짝을 이루어 앉았으며[偶坐][34] 생살 · 상벌이 모두 황후의 명에서 나왔다. 황후는 잔인하고 무자비하여 설령 매우 아끼는 사람이라도 조금도 연민을 주지 않았다. 황제의 만년은 갈수록 중풍[病風]으로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서 천하의 일을 모두 황후에게 맡겼다.[35] 황후는 이에 太平文으로 일을 다스리고자 諸儒를 대거 모집하여 궁전 안에 두고 『列女傳』 · 『臣軌』 · 『百僚新誡』 · 『樂書』 등을 편찬하게 하니 대략 1천여 篇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學士들에게 비밀리에 奏議를 裁可하게 하여 宰相의 권한을 나누었다.[36]

始, 士彠娶相里氏, 生子元慶 · 元爽. 又娶楊氏, 生三女, 伯嫁賀蘭越石, 蚤寡, 封韓國夫人, 仲即后, 季嫁郭孝愼, 前死. 楊以后故, 寵日盛, 徙封榮國. 始, 兄子惟良 · 懷運與元慶等遇楊及后禮薄, 后銜不置. 及是, 元慶爲宗正少卿, 元爽少府少監, 惟良司衛少卿, 懷運淄州刺史. 它日, 夫人置酒, 酣, 謂惟良曰, "若等記疇日事乎? 今謂何?" 對曰, "幸以功臣子位朝廷, 晚緣戚屬進, 憂而不榮也." 夫人怒, 諷后僞爲退讓, 請惟良等外遷, 無示天下私. 繇是, 惟良爲始州刺史, 元慶, 龍州, 元爽, 濠州, 俄坐事死振州. 元慶至州, 憂死. 韓國出入禁中, 一女國姝, 帝皆寵之. 韓國卒, 女封魏國夫人, 欲以備嬪職, 難於后, 未決. 后內忌甚, 會封泰山, 惟良 · 懷運以岳牧來集, 從還京師, 后毒殺魏國, 歸罪惟良等, 盡殺之, 氏

詳決. 自此內輔國政數十年, 威勢與帝無異, 當時稱爲'二聖'."(115쪽).

34) 『자치통감』 권201, 인덕 원년 12월 조의 후반부의 考異에 보이는 『唐曆』의 "帝坐于東間, 后坐于西間"이라는 형상을 말하는 듯하다.

35)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顯慶五年十月已後. 上苦風眩. 表奏時令皇后詳決."(24쪽).

36) 『자치통감』 권202, 상원 2년 3월 조, "天后多引文學之士著作郎元萬頃 · 左史劉禕之等, 使之撰列女傳 · 臣軌 · 百僚新戒 · 樂書, 凡千餘卷. 朝廷奏議及百司表疏, 時密令參決, 以分宰相之權, 時人謂之北門學士. [胡三省 註: 不經南衙, 於北門出入, 故云然]"(6376쪽).

曰蝮, 以韓國子敏之奉士護祀. 初, 魏國卒, 敏之入吊, 帝爲慟, 敏之哭不對. 后曰, "兒疑我!" 惡之. 俄貶死. 楊氏徙鄧 · 衛二國, 咸亨元年卒, 追封魯國, 謚忠烈, 詔文武九品以上及五等親與外命婦赴吊, 以王禮葬咸陽, 給班劍 · 葆杖 · 鼓吹. 時天下旱, 后僞表求避位, 不許. 俄又贈士護太尉兼太子太師 · 太原郡王, 魯國忠烈夫人爲妃.

이전에 무사확은 相里氏를 아내로 맞아 아들 元慶과 元爽을 낳았다.[37] 또 楊氏를 아내로 맞이하여[38] 세 딸을 낳았다. 큰딸은 賀蘭越石에게 시집갔으나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39] [무씨가 황후가 된 후] 韓國夫人에 봉해졌다.[40] 둘째 딸은 바로 황후이고, 막내딸은 郭孝愼에게 시집갔는데 앞서 죽었다.[41] [모친] 양씨는 황후 때문에 날로 총애를 받아 [현경 5년(660) 10월] 榮國[夫人]에 斜封되었다.[42] 일찍이 황후 오빠의 아들인 惟良 · 懷運과 元慶 등은 양씨와 황후에게 예의가 없었는데,[43] 황후가 마음에 원한으로 품고 있었다. 이에 이르러 [오빠] 무원경은 宗正少卿이 되고 무원상은 少府少監

37) 『책부원구』 권301, 外戚部2, 封拜, "初, 后父士彠娶相里氏, 生元慶 · 元爽."(3405쪽).

38) 『태평광기』 권76, 方士1, 袁天綱, "士彠令相妻楊氏."(479쪽); 『태평광기』 권224, 相4, 武后, "士彠使相其妻楊氏."(1730쪽).

39)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越石 · 孝愼及孝愼妻並早卒, 越石妻生敏之及一女而寡."(6349쪽).

40)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初, …… 后旣立, 楊氏號榮國夫人, 越石妻號韓國夫人."(6349쪽); 『구당서』 권183, 武承嗣傳, "賀蘭越石早卒, 封其妻爲韓國夫人."(4727쪽).

41)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初, 武士彠娶相里氏. 生男元慶 · 元爽; 又娶楊氏, 生三女, 長適越王府法曹賀蘭越石. 次皇后, 次適郭孝愼."(6349쪽).

42)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初, …… 后旣立, 楊氏號榮國夫人, 越石妻號韓國夫人."(6349쪽); 『구당서』 권183, 武承嗣傳, "尋又加贈士彠爲太尉, 楊氏改封爲榮國夫人."(4727쪽); 『구당서』 권4, 高宗本紀, 현경 5년(660) 10월 조, "丙子, 代國夫人楊氏改榮國夫人, 品第一, 位在王公母妻之上."(81쪽).

43)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士彠卒, 元慶 · 元爽及士彠兄子惟良 · 懷運皆不禮於楊氏, 楊氏深銜之."(6349쪽); 『구당서』 권183, 武承嗣傳, "士彠卒後, 兄子惟良 · 懷運及元爽等遇楊氏失禮."(4727쪽).

이 되고[44] [오빠의 아들] 무유량은 司衛少卿이 되고[45] 무회운은 淄州刺史가 되었다.[46] 어느 날 영국부인이 술자리를 마련하여 술기운이 오르자 [영국부인이] 무유량에게 말하길 "너희들은 옛일을 기억하는가? 지금은 어떤가"라고 하자 대답하길 "다행스럽게 功臣의 아들로 조정에 오른 후 만년에 외척인 탓에 승진하였으나 근심이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47] 부인이 노해 황후에게 넌지시 알려 거짓으로 겸손하게 무유량 등에게 지방으로 전출해 나가도록 하여 세상에는 개인적 감정이 없음을 보였다.[48] 이에 무유량은 始州刺史가 되었고[49] 무원경은 龍州[刺史]가 되었다. 무원상은 濠州[刺史]가 되었는데[50] 잠깐 사이에 일에 연루되어 振州에서 죽었다.[51] 무원경은 용주에 이르러 근심에 빠져 죽었다.[52] [언니인] 한국부인은 禁中을 출입하였는데, 경국지색의 딸이 하나 있었고 황제가

44)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初, …… 元慶自右衛郎將爲宗正少卿. 元爽自安州戶曹累遷少府少監."(6349쪽); 『책부원구』 권301, 外戚部2, 封拜, "則天立爲皇后, 以元慶爲宗正少卿, 元爽爲殿中少監."(3405쪽); 『신당서』 권74상, 宰相世系表4上, 武氏, "元慶, 宗正少卿."(3142쪽).

45) 『구당서』 권183, 武承嗣傳, "時元慶仕爲宗正少卿, 元爽爲少府少監, 惟良爲衛尉少卿."(4727쪽).

46)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懷運自瀛州長史遷淄州刺史."(6349쪽).

47)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榮國夫人嘗置酒, 謂惟良等曰, '頗憶疇昔之事乎? 今日之榮貴復何如?' 對曰, '惟良等幸以功臣子弟, 早登宦籍, 揣分量才, 不求貴達, 豈意以皇后之故, 曲荷朝恩, 夙夜憂懼, 不爲榮也.'"(6349쪽).

48)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榮國不悅. 皇后乃上疏, 請出惟良等爲遠州刺史, 上, 時掌翻. 外示謙抑, 實惡之也."(6349쪽).

49)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惟良自始州長史超遷司衛少卿."(6349쪽); 『구당서』 권183, 武承嗣傳, "惟良爲始州刺史."(4727~4728쪽).

50)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於是以惟良檢校始州刺史, 元慶爲龍州刺史, 元爽爲濠州刺史."(6349쪽); 『구당서』 권183, 武承嗣傳, "於是元慶爲龍州刺史, 元爽爲濠州刺史."(4727쪽).

51)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元爽坐事流振州而死."(6350쪽).

52)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元慶至州, 以憂卒."(6349~6350쪽); 『구당서』 권183, 武承嗣傳, "元慶至州病卒, 元爽自濠州又配流振州而死."(4728쪽).

모두 총애하였다. 한국부인이 죽자 딸을 魏國夫人에 봉하고 그녀를 嬪 지위에 봉하고 싶었으나 황후가 어렵게 느껴져[難] 결정하지 못하였다. 황후는 내심으로 매우 시기하였다. [건봉 원년(666) 정월] 때마침 황제가 泰山에 봉선을 지낼 때 무유량과 무회운이 岳牧의 지위로서 참석하였다가 함께 [4월] 京師로 갔는데,[53] [8월] 황후가 위국부인을 독살하고 죄를 무유량 등에게 돌려 모두 죽이고 氏를 蝮으로 바꾸었다.[54] 그리고 한국부인의 아들인 [賀蘭]敏之[55]에게 무사확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56] 앞서 위국부인이 卒하자 하란민지가 들어가 조문하였는데 황제가 소리 내어 우는데도 하란민지가 곡하며 대답[對]하지 않았다. 황후가 말하길 "하란민지가 나를 의심하는구나!"라고 하고 미워하였다. 잠깐 사이에 좌천되어 죽었다[貶死]. 양씨는 鄫[57] · 衛 두 나라에 사봉[徙]되었다가 咸亨 원년(670)에 卒하니[58] 魯國으로 추봉되었고 시호를 忠烈이라 하였다. 조서를 내려 文武 9품 이

53)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건봉 원년 4월 조, "甲辰, 車駕至自泰山, 先謁太廟而後入"(90쪽); 『구당서』 권183, 武承嗣傳, "乾封年, 惟良與弟淄州刺史懷運, 以岳牧例集於泰山之下. 時韓國夫人女賀蘭氏在宮中, 頗承恩寵. 則天意欲除之, 諷高宗幸其母宅, 因惟良等獻食, 則天密令人以毒藥貯賀蘭氏食中, ……"(4728쪽).

54)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건봉 원년 8월 조, "丁未, 殺司衛少卿武惟良 · 淄州刺史武懷運, 仍改姓蝮"(90쪽);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韓國夫人及其女以后故出入禁中, 皆得幸於上. 韓國尋卒, 其女賜號魏國夫人. 上欲以魏國爲內職, 心難后未決, 后惡之. 會惟良 · 懷運與諸州刺史詣泰山朝覲, 從至京師, 惟良等獻食. 后密置毒醢中, 使魏國食之, 暴卒, 因歸罪於惟良 · 懷運, 丁未, 誅之, 改其姓爲蝮氏."(6350쪽); 『구당서』 권183, 武承嗣傳, "則天密令人以毒藥貯賀蘭氏食中, 賀蘭氏食之, 暴卒, 歸罪於惟良 · 懷運, 乃誅之. 仍諷百僚抗表請改其姓爲蝮氏, 絕其屬籍."(4728쪽).

55) 『자치통감』 권201, 건봉 원년 8월 조, "初, …越石 · 孝愼及孝愼妻並早卒, 越石妻生敏之及一女而寡."(6349쪽).

56) 『구당서』 권183, 武承嗣傳, "乃以韓國夫人之[武]子敏之爲士襲嗣."(4728쪽).

57) 『전당문』 권239, 武三思, 大周無上孝明高皇后碑銘, "以顯慶五年十月. 轉拜榮國夫人. 尋改封鄫國夫人."(中華書局, 2420쪽下).

58) 『자치통감』 권201, 咸亨 원년(670) 9월 조, "甲申, 皇后母魯國忠烈夫人楊氏卒."(6365쪽); 『자치통감』 권202, 開耀 원년(681) 5월 조, "初, 太原王妃之薨也, 武士彠

상 및 五等親과 外命婦에게 달려가 조문하게 하고 [永昌 원년(689) 2월] [親]王의 禮로 咸陽에 장사지냈으며[59] 班劍 · 葆杖 · 鼓吹를 지급하였다. [咸亨 원년(670) 윤9월] 당시에 천하에 가뭄이 들자 황후가 거짓으로 表를 올려 지위에서 물러나길[避位]를 청하였는데, 허락하지 않았다.[60]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달] 또 무사확에게 太尉 · 兼太子太師 · 太原郡王을 추증하고 魯國忠烈夫人을 妃로 삼았다.[61]

上元元年, 進號天后, 建言十二事, 一勸農桑, 薄賦徭, 二給複三輔地, 三息兵, 以道德化天下, 四南北中尙禁浮巧, 五省功費力役, 六廣言路, 七杜讒口, 八王公以降皆習『老子』, 九父在爲母服齊衰三年, 十上元前勳官已給告身者無追核, 十一京官八品以上益禀入, 十二百官任事久, 材高位下者得進階申滯. 帝皆下詔略施行之.

上元 원년(674) [8월 황후를] 天后로 進號하니[62] 十二事를 建言하였다.

封太原王, 妃從其爵, 咸亨元年薨."(6402쪽); 『구당서』 권183, 武承嗣傳, "咸亨二年(671), 榮國夫人卒."(4728쪽).

59) 『자치통감』 권204, 則天后 永昌 원년(689) 2월 조, "武氏之先葬文水, 士彠及其妻葬咸陽."(6457쪽).

60) 『신당서』 권3, 고종본기, 함형 원년 윤9월 조, "癸卯, 皇后以旱請避位. 甲寅, 姜恪爲凉州道行軍大總管, 以伐吐蕃"(69쪽); 『자치통감』 권201, 함형 원년 윤9월 조, "癸卯, 皇后以久旱, 請避位, 不許."(6365쪽). 이때는 位는 황후의 자리라기보다는 '視朝' 혹은 '二聖'의 지위가 아닐까 한다.

61) 『자치통감』 권201, 함형 원년 9월 조, "壬子, 加贈司徒周忠孝公武士彠爲太尉 · 太原王, 夫人爲王妃."(6365쪽). 또 『자치통감』 권203, 則天后 光宅 원년(684) 9월 조, "考士彠爲太師 · 魏定王."(6422쪽)이라고 한다.

62) 『구당서』 권5, 고종본기상, 상원 원년 8월 조, "壬辰(15일), …… 皇帝稱天皇, 皇后稱天后. 改咸亨五年爲上元元年, 大赦"(99쪽); 『신당서』 권3, 고종본기, 상원 원년 8월 조, "壬辰, …… 大赦, 改元, 賜酺三日"(71쪽); 『당회요』 권3, 皇后, 天后武氏, "咸亨五年八月十五日. 稱天后."(24쪽); 『책부원구』 권16, 帝王部, 尊號, 8월 조, "皇帝稱天皇, 皇后稱天后, 以避先帝 · 先后之稱."(170쪽); 『신당서』 권4, 則天皇后本紀, 상원 원년(674), "高宗號天皇, 皇后亦號天后, 天下之人謂之'二聖'."(81쪽); 『구당서』 권6,

첫째는 農桑을 권장하고 부역[賦徭]을 가볍게 한다[薄]. 둘째는 三輔 지역[租賦][63]를 면제한다. 셋째는 군대를 쉬게 하고[息兵], 道德으로 天下를 교화한다. 넷째는 南北中尙에서 浮巧를 금지한다. 다섯째는 功費와 役力을 줄인다[省]. 여섯째는 言路를 넓힌다. 일곱째는 讒言을 근절한다. 여덟째는 王公 이하 모두에게 『老子』를 익히게 한다. 아홉째는 부친이 살아있을 때[아들은] 모친을 위해 齊衰 3년을 복상[服]한다. 열 번째는 상원 연간 이전의 勳官으로 이미 告身을 지급한 자는 검열[追覈]하지 않는다. 열한 번째는 京官 8품 이상에게 봉록[禀入]을 늘린다. 열두 번째는 百官 가운데 일을 맡은 지 오래되고 재능은 높지만 지위가 낮은 자는 모두 [官]階를 높여 체류되지 않게 한다. 황제가 모두 조서를 내려 거의 施行하도록 하였다.

蕭妃女義陽·宣城公主幽掖廷, 幾四十不嫁, 太子弘言於帝, 后怒, 酖殺弘. 帝將下詔遜位於后, 宰相郝處俊固諫, 乃止. 后慾外示寬裕, 劫人心使歸已, 即奏言, "今群臣納半俸·百姓計口錢以贍邊兵, 恐四方妄商虛實, 請一罷之." 詔可.

蕭妃의 딸인 義陽[公主]와 宣城公主는 掖廷에 유폐되었는데 거의 마흔 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다. [상원 2년(675) 4월] 태자 [李]弘이 황제에게 이를 말하자 천후가 노하여 이홍을 독살[鴆殺]하였다.[64] [같은 해 3

則天皇后本紀, "高宗稱天皇, 武后亦稱天后. 后素多智計, 兼涉文史. 帝自顯慶已後, 多苦風疾, 百司表奏, 皆委天后詳決. 自此內輔國政數十年, 威勢與帝無異, 當時稱爲'二聖'."(115쪽).

63) 『구당서』 권2, 태종본기상, 정관 원년 6월 조, "是夏, 山東諸州大旱, 令所在賑恤, 無出今年租賦"(32쪽); 同 권4, 고종본기상, 영휘 6년 정월 조, "親謁昭陵, 曲赦醴泉縣民, 放今年租賦"(73쪽); 同 권5, 고종본기하, 건봉 원년 정월 조, "[壬申(5일)]改麟德三年爲乾封元年, …… 所歷之處, 無出今年租賦"(89쪽) 등 참조.

64)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상원 2년(675) 4월 조, "己亥皇太子[李]弘薨于合璧宮之綺雲殿. 時帝幸合璧宮, 是日還東都"(100쪽); 『자치통감』 권202, 상원 2년 4월 조, "太子弘仁孝謙謹, 上甚愛之, 禮接士大夫, 中外屬心. 天后方逞其志, 太子奏請, 數迕

월] 황제가 장차 조서를 내려 천후에게 황제 자리를 양보하려 하였는데, 재상 郝處俊이 강하게 간언하였기 때문에 그만두었다.[65] 천후는 밖으로 관대함[寬裕]을 나타내어 인심을 자신에게 모으기 위해 곧 奏하여 말하길 "지금 군신들은 월봉[俸]의 절반을 납부하고 백성은 머리 숫자대로 錢을 내어 변방 병사[邊兵]를 먹이고 있는데, 四方에서 멋대로 虛實을 헤아릴까 우려되오니 모두 없애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조서를 내려 그렇게 하게 하였다.

儀鳳三年, 群臣·蕃夷長朝后於光順門. 即並州建太原郡王廟. 帝頭眩不能視, 侍醫張文仲· 秦鳴鶴曰, "風上逆, 砭頭血可愈." 后內倖帝殆, 得自專, 怒曰, "是可斬, 帝體寧刺血處邪?" 醫頓首請命. 帝曰, "醫議疾, 烏可罪? 且吾眩不可堪, 聽爲之!" 醫一再刺, 帝曰, "吾目明矣!" 言未畢, 后簾中再拜謝, 曰, "天賜我

旨, 由是失愛於天后. 義陽·宣城二公主, 蕭淑妃之女也, 坐母得罪, 幽于掖庭, 年踰三十不嫁. 太子見之驚惻, 遽奏請出降, 上許之. 天后怒, 即日以公主配當上翊衞權毅·王遂古. 己亥, 太子薨于合璧宮, 時人以爲天后酖之也."(6377쪽); 『자치통감』 권202, 상원 2년 6월 조, "戊寅, 立雍王賢爲皇太子, 赦天下"(6377쪽).

65)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상원 2년 3월 조, "丁巳, 天后親蠶於邙山之陽. 時帝風疹不能聽朝, 政事皆決於天后. 自誅上官儀後, 上每視朝, 天后垂簾於御座後, 政事大小皆預聞之, 內外稱爲二聖. 帝欲下詔令天后攝國政, 中書侍郎郝處俊諫止之"(100쪽); 『구당서』 권84, 학처준전, "[上元]三年, 高宗以風疹欲遜位, 令天后攝知國事, 與宰相議之. 處俊對曰, '嘗聞禮經云, 『天子理陽道, 后理陰德』, 則帝之與后, 猶日之與月, 陽之與陰, 各有所主守也. 陛下今欲違反此道, 臣恐上則譴見于天, 下則取怪于人. 昔魏文帝著令, 身崩後尚不許皇后臨朝, 今陛下奈何遂欲躬自傳位於天后. 況天下者, 高祖·太宗二聖之天下, 非陛下之天下也. 陛下正合謹守宗廟, 傳之子孫, 誠不可持國與人, 有私於后族. 伏乞特垂詳納'. 中書侍郎李義琰進曰, '處俊所引經旨, 足可依憑, 惟聖慮無疑, 則蒼生幸甚.', 帝曰, '是.', 遂止."(2799~2800쪽); 『자치통감』 권202, 상원 2년 3월 조, "上苦風眩甚, 議使天后攝知國政. 中書侍郎同三品郝處俊曰, '天子理外, 后理內, 天之道也. 昔魏文著令, 雖有幼主, 不許皇后臨朝, 所以杜禍亂之萌也. 陛下柰何以高祖·太宗之天下, 不傳之子孫而委之天后乎!' 中書侍郎昌樂李義琰曰, '處俊之言至忠, 陛下宜聽之!' 上乃止."(6375~6376쪽).

師!", 身負繒寶以賜.

의봉 3년(678) [정월] 군신들과 蕃夷의 長이 光順門에서 천후에게 조알하였다.[66] 이어서 바로 幷州에 太原郡王의 廟를 세웠다. 황제가 현기증[頭眩]으로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없자 侍醫 張文仲과 秦鳴鶴이 말하길 "風 [기운]이 위로 역류하기 때문에 머리의 혈맥[血]에 침을 놓으면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천후는 내심으로 황제가 위독해지면 자신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분노하여 말하길 "[두 사람을] 마땅히 참수해야 합니다. 황제 몸의 혈맥에 어찌 침을 찌를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시의가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구걸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의사가 병의 치료를 논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는가? 또 나는 현기증을 참을 수 없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시의가 몇 차례 찌르자 황제가 말하길 "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였는데, 말이 마치기도 전에 천후가 주렴 안에서 再拜하며 감사하여 말하길 "하늘이 우리의 스승을 내려 주었습니다!"라고 하고 직접 繒寶를 들어 [시의에게] 하사하였다.

帝崩, 中宗即位, 天后稱皇太后, 遺詔軍國大務聽參決. 嗣聖元年, 太后廢帝爲廬陵王, 自臨朝 以睿宗即帝位. 后坐武成殿, 帝率群臣上號冊. 越三日, 太后臨軒, 命禮部尙書攝太尉武承嗣 · 太常卿攝司空王德眞冊嗣皇帝. 自是太后常御紫宸殿, 施慘紫帳臨朝.

[弘道 원년(683) 12월] 황제가 붕어하고 中宗이 즉위하니 天后를 皇太后라고 칭하고[67] 遺詔를 반포하여 軍國大務에 參決하도록 하였다.[68] 嗣聖 원

66) 『자치통감』 권202, 儀鳳 3년(678) 정월 조, "辛酉, 百官及蠻夷酋長朝天后于光順門." (6384쪽).

67) 『자치통감』 권203, 弘道 원년(683) 12월 조, "甲子(11일), 中宗即位, 尊天后爲皇太后, 政事咸取決焉."(6416쪽). 또 그 직전의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즉 『자치통감』 권203, 홍도 원년(683) 12월 조, "丁巳(4일), 改元, 赦天下. 上欲御則天門樓宣赦, 氣逆不能乘馬, 乃召百姓入殿前宣之. 是夜, 召裴炎入, 受遺詔輔政, 上崩

년(684)[69] [정월] 太后가 황제를 폐하여 廬陵王으로 삼고[70] 스스로 臨朝하여 睿宗을 황제에 즉위시켰다.[71] [홍도 2년 2월] 태후가 武成殿에 머물자 황제가 군신들을 거느리고 號冊을 올렸다.[72] 3일 후에 [같은 달] 태후가 臨軒하여 禮部尙書 · 攝太尉 武承嗣와 太常卿 · 攝司空 王德眞에게 명하여 嗣皇帝로 책립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태후는 항상 紫宸殿으로 가서 어두운 자주색 장막을 설치하고 臨朝하였다.[73]

於貞觀殿. 遺詔太子柩前即位, 軍國大事有不決者, 兼取天后進止."(6416쪽);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홍도 원년 12월 조, "己酉(丁巳?), 詔改永淳二年爲弘道元年. 將宣赦書, 上欲親御則天門樓, 氣逆不能上馬, 遂召百姓於殿前宣之. 禮畢, 上問侍臣曰, '民庶喜否?' 曰, '百姓蒙赦, 無不感悅.' 上曰, '蒼生雖喜, 我命危篤. 天地神祇若延吾一兩月之命, 得還長安, 死亦無恨.' 是夕, 帝崩於眞觀殿, 時年五十六. 宣遺詔, '七日而殯, 皇太子即位于柩前. 園陵制度, 務從節儉. 軍國大事有不決者, 取天后處分.' 群臣上謚曰天皇大帝, 廟號高宗. 文明元年八月庚寅, 葬於乾陵. 天寶十三載, 改謚曰天皇大弘孝皇帝."(111~112쪽).

68) 『자치통감』 권203, 弘道 원년(683) 12월 조, "[丁巳] 是夜, 召裴炎入, 受遺詔輔政, 上崩於貞觀殿. 遺詔太子柩前卽位, ……"(6416쪽).

69) 『자치통감』 권203, 嗣聖 원년(684) 정월 조, "甲申朔, 改元嗣聖."(6417쪽).

70) 『자치통감』 권203, 사성 원년 2월 조, "戊午, 太后集百官於乾元殿, 裴炎與中書侍郎劉禕之, 羽林將軍程務挺 · 張虔勗勒兵入宮, 宣太后令, 廢中宗爲廬陵王, 扶下殿."(6417~6418쪽).

71) 『자치통감』 권203, 사성 원년 2월 조, "己未, 立雍州牧豫王旦爲皇帝. 政事決於太后, 居睿宗於別殿, 不得有所預."(6418쪽).

72) 『자치통감』 권203, 사성 원년 2월 조, "甲子, 太后御武成殿, 皇帝帥王公以下上尊號."(6419쪽).

73) 『자치통감』 권203, 사성 원년 2월 조, "丁卯, 太后臨軒, 遣禮部尙書武承嗣冊嗣皇帝. 自是太后常御紫宸殿, 施慘紫帳以視朝."(6419쪽).